

國際環境問題 동향과 우리의 對應方案

— 새로운非關稅 貿易障壁으로 대두, 韓國 큰 타격 우려 —

■ 「하나뿐인 地球」가 환경오염이란 중병을 앓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추구해온 開發위주의 성장전략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안겨주었으나 인류에게 환경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石油, 石炭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내리는 산성비는 호수, 숲, 강, 토양 등 자연의 경관을 죽이고 있다 ■

1. 地球村의 환경오염 비상

美國 5대호의 水中 동식물이 이미 산성비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北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울창한 숲과 호수 역시 산성비의 독침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生命의 우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오존층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화합물이라던 불화염화탄소(CFC, 일명 프레온가스) 때문에 구멍이 나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을 증가시켜 피부암, 백내장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고 농수산물의 수확감소, 플랑크톤의 감소로 인한 먹이사슬의 붕괴, 산림황폐화 등의 自然災害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공장, 발전소, 가정 등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탄산가스는 地球의 기온 및 海面을 상승시켜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몰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90년 8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부간 패널(IPCC)은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의 방출이 50% 증가해 지난 100년동안 지구평균온도가 0.3~0.6°C 상승했으며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방출이 지속되면 2100년에 가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3~6°C 상승하고 해수면도 30~100cm 상승해 저지대와 해안지역이 수몰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인간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수많은 종(Species)이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UCN)에 따르면 매년 2만5천내지 5만여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고 금세기말에 가서는 100만종의 생물이 멸종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하루평균 100여종의 생물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森林의 벌채와 무리한 工業政策의 수행으로 인한 지구의 사막화, 인류

의 산소공급원이며 유독 가스의 흡수원인 산림의 황폐화, 마구 쏟아져나오는 산업 폐기물 처리등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만 될 난제중에 난제들이다.

2. 환경문제 國際 이슈로 대두

이처럼 지구촌의 환경오염 정도가 위협 수위에 다다르고 세계도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고성 여론이 빗발치자 '72년 6월 UN은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치유하기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인류환경회의」를 개최하고 “人間은 품위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환경권을 인류의 기본권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전운동은 정치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국가 이기주의인 내셔널리즘의 팽배라는 당시의 時代的 상황에 밀리어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한채 표류를 거듭해 오다가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85년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다.

中·蘇 양국이 開放政策을 표명하고 美·蘇 양국이 군비축소에 합의를 봄에 따라 戰후 냉전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자 軍備증강에 열을 올리던 선진국들이 비로소 「환경문제」라는 인류공동의 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스톡홀름 宣言”의 10주년인 '82년 UN은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를 채택했고, 그 이듬해인 '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을 결의했다. '87년 UN총회는 “生態系의 상호작용이 國際安保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문제가 국제정치면에서도 주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89년 제44차 UN총회에서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72년 스톡홀름회의의 20주년이 되는 '92년 6

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기로 결의했다.

세계 60개국 이상의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UN산하 각국의 정부관리, 학계 및 경제계 대표 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 규범이 될 “지구헌장(Earth Charter)과 이에 대한 세부 실천강령인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될 예정이며,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변화 방지협약”, 유전공학에 영향을 미치게 될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열대산림 관리에 관한 “산림선언문”등의 국제협약도 채택될 예정이다.

금년 3월4일 이 회의의 사무국은 △대기보전을 위해 국별에너지 수요목표 설정, 석유등의 소비억제 △산림재생 등 필요 경비 조달을 위해 석유 및 전력 등에 환경세 부과, 에너지 절약 촉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자금 확보를 위해 방위비 삭감, 세계은행의 지구환경기금 확충 △해양보호를 위해 연안국의 주권을 200해리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제 21”의 사무국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현재까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3월 2일~4월 5일) 제4차 UNCED 준비회의에서 협의를 거친후 6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에너지 수요목표 설정과 환경세 부과 등이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어서 참가국들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될 “지구헌장”과 “실천강령”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년여에 걸친 준비회의를 거쳐 각국 정부가 합의한 규범이기 때문에 향후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원칙으로 활용될 것이다.

3. 先進國들 環境規制 금강화

法的 구속력이 없이 단지 각국의 적극적

인 협조를 촉구하는 선언문 채택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환경문제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72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깨달은 先進國들은 최근 구속력을 가진 다양한 국제환경협약들을 서둘러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미 채택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85년 3월)과 몬트리올의정서('87년 9월),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89년 3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國際交易을 규제하는 워싱턴협약('73년 2월),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방지협약('92년 6월 채택예정),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92년 6월 채택예정)등 약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들은 가입국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비가입국과 협약 불준수국에 대한 무역상의 제재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각국의 産業 및 貿易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장기적인 국제무역 패턴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 가입국에 대해서는 규제물질인 CFC 및 할론가스의 사용량을 '86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95년 1월부터는 '86년 실적의 50%, '97년 1월부터는 '86년 실적의 15%로 그 사용량을 줄이고 2000년 1월부터는 규제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7일부터 CFC 함유제품(자동차, 냉장고, 에

어컨, 에어로졸 등)의 가입국으로의 輸出을 금지시키고 '95년부터는 CFC를 사용해 가공한 제품(반도체, 초정밀가공기기 등)의 수출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CFC는 에어컨, 냉장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각종 분무용제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89년중 CFC와 할론가스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 4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相關産業의 市場규모는 연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던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7일 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비가입국들에게 가해지는 무역규제는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CFC의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었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CFC의 사용 가능량이 약 2만t으로 한정됨에 따라 국내 총 예상수요인 3만6천t의 57.2% 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냉장고, 반도체, 자동차 등 相關産業의 제품제조 및 수출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相關업계에서는 국내 立法조치 및 대체물질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이를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美國과 EC 등 선진 각국이 규제물질의 사용금지 시기를 당초 예정인 2000년보다 5년 앞당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수급계획의 재조정 및 대체물질 개발시기의 단축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표1. 우리나라의 연도별 CFC 수요량 및 전망

(단위 : kg)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8
1인당 사용량	0.28	0.42	0.44	0.51	0.59	0.68	0.8	0.93	2.2

표2. 國別 이산화탄소 배출현황(1988년)

국 별	총 배출량 (탄소환산 백만 t)	점유율(%)	1인당 배출량 (탄소환산 t)
미국	1,310.2	22.23	5.3
소련	1,086.0	18.43	3.8
중국	609.9	10.35	0.6
일본	269.8	4.58	2.2
서독	182.7	3.10	3.0
인도	163.8	2.78	0.2
영국	152.5	2.59	2.7
폴란드	125.3	2.13	3.3
캐나다	119.4	2.03	4.6
이탈리아	98.1	1.66	1.7
동독	89.3	1.52	5.4
프랑스	87.3	1.48	1.6
멕시코	83.7	1.42	1.0
남아공	77.5	1.32	2.3
호주	65.8	1.12	4.0
체코	63.7	1.08	4.1
루마니아	60.2	1.02	2.6
한국	55.8	0.95	1.3
브라질	55.2	0.94	0.4
스페인	51.5	0.87	1.3
기타	1,085.3	18.42	-
계	5,893.0	100.00	1.2

오는 6월 UNCED회의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각국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방지 협약 역시 몬트리올의정서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우리나라의 産業 및 貿易에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88년도 또는 '90년도 수준으로 안정시킨후 2005년까지는 기준연도에 비해 20% 정도 감축하려하는 이 협약이 채택될 경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대책,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先進國들은 지구 생태계 보전과 오염방지 정책을 국내적으로 실시하면서 비협조국에 대해서는 교역규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美國은 '90년 4월 자국내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수정안을 통과시켜 자동차 오염배출기준을 강화했고 '91년 1월부터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및 할론가스를 포함하거나 사용해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오존파괴세(Ozone Depleting Excise

Taxes)’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일에는 유자망어업을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모든 水産物과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法案이 美 下院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上院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팩우드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유자망어업을 금지하는 상하양원의 단일안이 금년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유자망어업이 금지될 경우 140여척의 어선과 4천여명의 선원이 연간 8만여톤의 오징어를 어획하는 우리나라 유자망 어업도 전면 폐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4. 환경문제 새로운 南·北 問題로 등장

先進國 주도의 국제환경협약들은 대부분 협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는 물론 교역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무역규제조항을 두고 있어 쾌적한 환경보다는 빵이 굵한 開發國들의 거센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開發國들은 이와같은 국제환경협약들이 이제 개발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開發國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않고 선진국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며 현 지구환경 파괴의 주범국인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開發國들에게 떠 넘기려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규제에 앞서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거한 새롭고, 충분하고, 추가적인(New, Adequate and Additional) 재정지원과 비상업적(Non-Commercial)이며 특혜적(Preferential)인 기술이전을 선진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開發國들은 만일 선진국들로부터의

재정 및 기술이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구환경 보전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開發國들의 주장에 대해 선진국들은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지원의 경우 현재 세계은행, UN개발계획(UNDP)과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GEF, 약 15억弗 상당)의 운영실적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입장이고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대부분 기술이 민간기업 소유이며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업적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술이전보다는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先進國과 開發國들은 현재 지구환경보전의 기본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이 지탱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과 해석을 둘러싸고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 또는 생태계 파괴적인 자원수출에 의존하는 환경과파괴적인 개발방식(Un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과도하고도 방만한 소비행태(Unsustainable Lifestyle: 예, 1회용품 사용증가)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같이 先·開發國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가운데 '91년 6월 開發國들은 中國에서 자신들의 공동입장 마련을 위해 제1차 開發國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開發國 입장을 밝히는 북경선언을 채택했고 오는 4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UNCED회의에 대비한 開發國의 공동입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선진국 그룹인 OECD역시 '91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OECD환경 각료회의를 갖고 '90년대가 “환경관리(Environment Management)”의 시대임을 강조하고 환경세 도입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EC 환경장관들도 '91년 10월, 지구온실효과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Tax를 부과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며 '93년부터 원유 1배럴당 3弗씩 부과하기 시작해 2000년도까지 10弗로 끌어올릴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환경청정 기술을 이용하는 새로운 환경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자국경제에 유리한 반면 개도국 등은 환경문제를 Leverage로 활용해 70년대에 주장했다 실패한바 있는 신국제경제질서의 목표를 구현해 봐야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양자간의 타협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환경문제 새로운 非關稅 貿易장벽으로 대두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최근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온 GATT가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현행 GATT규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근거로서는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가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개념이 불분명해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들이 통상마찰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국제환경협약들이 내포하고 있는 무역제재 수단들을 GATT체제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해 GATT에서는 지난 '71년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활동이 중단되었던 「환경과 무역에 관한 작업반」의 활동을 재개하기로 지난해 10월 GATT

이사회에서 결정한바 있다.

이 작업반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환경보호조치가 자유무역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관련 규정과 GATT원칙과의 상충여부, 각국의 국내법상환경관련 규정의 세계 무역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GATT에서의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매듭지어지든 간에 작금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곧바로 우리 經濟 및 대외무역활동에 현실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막바지에 이른 UR협상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고려요소가 협상 분야별 곳곳에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기술장벽협정(TBT Code)에서는 규율대상에 “기술사양” 뿐만 아니라 “상품의 특성”과 “공정 및 생산방법”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앞으로는 상품수출을 위한 제품의 환경기준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무역에 관한 통일된 國際的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진국들은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市場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美議會 무역소위 위원장인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제경제연구소(IIE)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의 환경기준 준수비용이 그 나라의 對外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환경 상계관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아울러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를 논의하기 위해 「그린라운드(Green Round)」를 출범시킬 것을 제창한 바 있다.

이것은 환경보호와 국제무역 문제를 바라보는 선진국의 시각을 압축해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한 강화된 무역규범의 도입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 뒤에는 환경보전이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自國내 산업이익을 확보하고, 선진환경청정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심분 활용하려는 저의도 일부 숨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환경보호 논의가 조만간 우리경제 및 수출업계에 현실적으로 닥쳐올 새로운 도전이자 통상여건임을 냉철히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6. 政府 및 關聯業界의 積極적 대응 艱요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불어닥치기 시작한 이러한 지구환경동향은 넘어야 할 또다른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이에 우리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지구환경문제의 논의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우리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UR이상의 충격과를 던져 줄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나 企業公히 그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환경규제가 산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과소평가하고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것 같다. 美國의 듀폰社를 비롯해 日本의 아사이글라스, 英國의 ICI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CFC 대체물질 및 그에 필요한 공정기술, 부자재 등을 개발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뒤늦게 대체물질 개발에 착수해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대체물질의 가격은 기존 CFC의 가격보다 10~20배 비싸 만일 대체물질 개발

이 지연되어 대체물질을 수입해 사용할 경우 製品原價를 상승시켜 우리나라 관련제품들의 대외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신흥공업국으로서 對外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은 명약관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첫째,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산업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국제협상에서 산업혁명이후 200년동안 무차별하게 지구 환경을 파괴시켜 왔던 先進國들의 역사적, 누적적 책임과 산업기반이 취약해 환경 규제로부터 별 영향을 받지 않을 후진개도국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해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 원전개발계획 수립시 LNG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고 수송, 발전, 건축부문등 열효율 개선 가능성이 큰 부문의 구조를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환경규제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기준 예시제 등을 활용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民間業계의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대체물질 사용 제품 및 저공해 기술적용제품에 대한 품질표시 제도 등을 도입해 환경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規制物質의 사용절감 및 회수, CO₂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범국민적

협조를 유도하고 업계의 인식제고를 위해 환경관련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자체 대응노력일 것이다. 지구환경보전 논의에서 파생되는 通商여건의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당사자도 기업인 동시에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주체 또한 기업 자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우리기업이 高貨金과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은 사실이나, 환경청정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대체물질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다양한 자체 대응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이유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對外通商 여건을 우리의 새로운 국제경쟁력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OTRA, 해외시장)

새 질서 새생활로
문화국민 긍지찾자